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외교관 면세	해당 기관의 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무조건 면세	1. 「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16호의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면세 신청에 필요한 서류 3. 「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7호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기증받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기증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13호의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무역협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14호 및 제15호의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관수용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를 받으려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